

혁신도시 산·학·연 클러스터 규제개선, 허용건축물... 시·도에서 정한다

- 8월 9일 「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관리 매뉴얼」 일부개정·시행 -

(지금까지는)

충북 A군에서는 입주기업의 근로자 자녀 돌봄시설(어린이집)에 대한 입주요청이 있었다. 그러나, 현행 규정상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내 어린이집은 불허용도인 노유자시설(아동관련시설)에 해당돼 돌봄시설이 들어올 수 없어, 근로자들은 매일 아침 자녀를 클러스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어린이집으로 등하원을 시켜야 했다.

(앞으로는)

8월 9일부터 「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관리 매뉴얼」 개정되어,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의 시설 입지기준을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어, 충북 A군에도 돌봄시설이 입주할 수 있게 된다.

- 앞으로 전국 10개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의 시설 입지기준을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.
 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「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관리 매뉴얼」 (이하 매뉴얼)을 개정하여 8월 9일부터 시행한다.
-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는 국토교통부 「시설 입지기준 가이드라인」 (이하 가이드라인)에 따라 건축물 용도를 일률적으로 제한*하고 있다.
 - * 건축물 허용용도 14개, 금지용도 11개를 지정·운영하고, 기타 미규정된 시설은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심의로 결정
 -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의 현행 가이드라인은 '14년 제정 이후 10년이 경과하였고,

- 전국 10개 혁신도시별 전략·특화산업을 육성하고,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역맞춤형 건축물의 입지가 요구되며,
 - 분양률(82%) 대비 낮은 입주율(약 53%)을 제고하기 위하여 혁신도시별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어 왔다.
- 이에,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시설 입지기준을 일률적 규제에서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전환하여 혁신도시별 특성에 맞는 건축물의 입지를 유도한다.
- 우선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의 조성 취지와 기능은 유지하되 건축물 허용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개정하였다.
 - 다만, 산학연 클러스터의 조성 취지에 맞지 않은 주택, 숙박·위락시설 등에 대한 입지 제한을 목적으로 규정한 ‘금지용도’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,
 - 금지용도 중 입주기업 근로자의 복지와 연계된 어린이집과 같은 아동 관련시설은 허용하는 것으로 완화한다.
- 앞으로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입지기준 완화에 따라 혁신도시별 특성 반영과 기능 유지에 필요한 교육·문화·운동·관광휴게시설 등 다양한 지원시설의 입주와 더불어 근린생활시설의 확대가 가능해 지고,
- 입주기업 근로자(젊은층) 대상 어린이집과 같은 돌봄시설을 허용하여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유치를 촉진하게 되는 등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활성화가 기대된다.
- 국토교통부 정양기 혁신도시산업과장은 “산학연 클러스터가 혁신도시의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성장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업 유치 등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지속해 나갈 것”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혁신도시발전추진단 혁신도시산업과	책임자	과 장	정양기 (044-201-4452)
		담당자	사무관	전상곤 (044-201-4462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